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공탁금 출급·회수권자 중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
보유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공탁금 출급·회수에 관
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공탁금 출급·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전기통신
사업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
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0조의2제3항)
- 공탁금 출급·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
안 제60조의2제3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안내
이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(안 제60조의2제5항)

4.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·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공탁금 출급·회수권자의 성명(상호, 명칭)
2. 공탁금 출급·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3. 공탁금 출급·회수권자의 주소(본점, 주사무소)
4. 공탁금 출급·회수권자의 전화번호

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,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,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
수 없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877